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입 통제절차 (1)

- 美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을 중심으로



尹 國

국방부 조달본부

駐美 군수무관단, 육군 소령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 (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필자 주 -

주 미 군수무관단에서 수송장교로 근무하면서 필자는 주 업무인 해외도입물자(FMS 및 상업구매물자)에 대한 해외수송(항공 및 해상) 업무를 수행하고 부가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방산업체 지원 활동은 주로 2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국내 방산업체가 미국내 수출업체로부터 물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 후 국방부에 납품시 필요한 수출면허(Export License) 획득을 지원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국내 방산업체가 미국이 아닌 제3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하고자 하여 미국 내로 일시적이거나 입국시에 필요한 임시수입면허(Temporary Import License) 획득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필자는 이 업무를 지원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국제무기교역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이하 ITAR)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입 통제절차

• 국제무기교역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의 역할

미국의 무기류 수출관련법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美 정부는 일찍이 1793년부터 무기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고, 1937년에 무기통제위원회(Munitions Control Board)를 설립하여 무기류의

이전에 대한 방침을 설정하였으며, 1955년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시행 규정으로 ITAR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그 이후 ITAR은 수 십년간에 걸쳐 변화하여 왔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외정책 및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당시 미국의 사고와 국제관계를 반영하여 온 것이다.

'80년대에는 미국의 기술이 소련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현재에는 제3세계와 중동지역에 대하여 미사일 기술의 성장, 생화학전 및 테러리즘을 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규정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ITAR은 연방규정 중에서 '120~130'에 해당하는 규정(Title 2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20~130)으로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근거로 한, 국제 무기교역에 관한 美 정부의 규정이다.

무기수출통제법(AECA)은 대통령에게 방위품목 및 방위용역에 관하여 수출과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 권한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1958)으로 국무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제안보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예하 정치,



F-16 조립 공정

군사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Military Affairs)의 감독 하에 방위교역 통제실장(Director of the Office of Defense Trade Control)이 ITAR을 통하여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ITAR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목위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TAR 구성 내용

- 120조 : 목적, 배경 및 정의
- 121조 : 미국 무기 목록(U. S. Munitions List)
- 122조 : 등록
- 123조 : 방위품목의 수출면허
- 124조 : 제조면허, 기술지원 및 창고와 국외 보급 협정
- 125조 : 일반 기술제한 및 비밀 방위품목
- 126조 : 일반 정책 및 규정
- 127조 : 위반 및 벌금
- 128조 : 행정절차
- 129조 : [에비란]
- 130조 : 정치적 기부, 비용 및 수수료

***국무부 방위교역통제실(Office of Defense Trade Control)의 기능**

국무부의 방위교역통제실(Office of Defense Trade Control; 이하 ODT)에서는 중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무기수출통제법(AECA) 상의 방위품목이나 방위용역의 상용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의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22 CFR 120.12)

방위교역통제실의 실무자(licensing officers)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민간인 10명, 현역 4명) 되어 있으며, 각 실무자가 면허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자 1명이 1달에 약 300건에 달하는 면허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실무자를 직접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

면허심사 기간은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수출면허의 경우는 약 3개월, 임시수입의 경우는 약 3주가 각각 소요된다. 그러나 특별히

타부서(대체로 국방부)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타부서의 심사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일단 타부서로부터 검토 결과가 국무부로 넘어오게 되면 실무자가 면허승인에 서명한 후 면허의 원본을 수출업체 앞으로 직접 우송하게 된다.

그리고 실무자의 배정은 후술하게 될 미국무기목록(USML)의 항목별로 수출업체 이름이나 해당 국가 이름의 알파벳을 기준으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방위교역통제실(ODTC)은 수출업체와 美 정부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정부내 여러 기관들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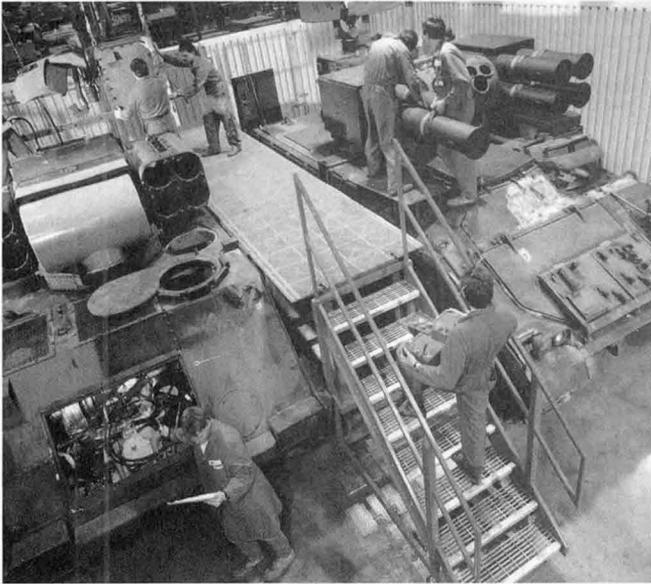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등록**

방위교역통제실(ODTC)과의 업무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ITAR은 방위품목을 수출 또는 제조하거나 방위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미국 내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위교역통제실(ODTC)에 등록을 해야 하며 수출 활동을 하지 않는 제조업자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도록 등록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2 CFR 122.1)

또한 방위교역통제실에 등록된 미국인(자연인, 기업, 협회, 단체, 트러스트, 또는 미국 내에서 사업하고자 설립된 조직 또는 단체, 그리고 연방, 주, 지방 정부 기관 포함)과 외국 정부 기관만이 소정의 서류를 신청하여 면허나 기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2 CFR 120.15), (22 CFR 121.1)

그러나 고객으로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에 면허를 획득하였으나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면허 절차 과정에서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입력된 것이므로 규정 위반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곤경에 빠질 수가 있다.

등록서류는 국무부 양식(DSP-9) 및 전송편지(transmittal letter)를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가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비는 1회 등록 시 4년까지 유효하며



ADATS 대공 방어 무기체계의 조립 장면

위교역통제실(ODTC)로 서면 질의를 하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요청서에는 품목이나 용역의 설계,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국무부는 상무부의 수출행정국(BEA) 및 국방부의 기술보안국(Defense Technic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22

1년 기준 수수료는 미화 600달러이다. (22 CFR 122.2)

*** 품목(Commodity)에 관한 관할권 결정**

미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면허(License)가 필요하며 현재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상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도에 대하여 종종 혼동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어떤 정부 기관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품목 관할권 결정(commodity jurisdiction determinations)'이란, 어떤 품목이 미국무기목록(USML)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CFR 120.4)

만약에 적합한 기관으로 면허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출요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반환되어 면허 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미국 세관에 압류되어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관할권에 대하여 국무부의 방

CFR 120.4)

일단 미국무기목록(USML)상의 품목으로 분류(방위품목과 방위용역으로 지정)되면 ITAR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국무부의 통제하에 수출(영구 또는 임시)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그리고 핵통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수출면허와 관련된 부처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수출면허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 발급하며 국무부는 방위품목 또는 방위용역으로 지정된 미국 무기 목록(U.S. Munitions List)상의 품목에 대하여, 상무부(DOC,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는 1979년도에 제정된 수출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하여 품목통제목록(Commodity Control List)상의 품목과 미국 무기 목록(USML)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중사용품목(dual-use commodities) 및 기술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반면에 특정 방위품목 및 방위용역에 대한 영구수입의 경우는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3개의 기관이 법률상 각각 독립적인 면허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2 CFR 120.5)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경우는 면허 발급을 하지는 않지만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근거하고 있는 미국무기목록(USML)상의 품목과 상무부의 통제하에 있는 이중사용품목(dual-use items)에 대한 수출 승인과정 뿐만 아니라 어떤 품목이 미국무기목록(USML)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설계 및 제조 노하우, 핵심 제조기술(keystone manufacturing), 시험장비 검사 및 운용, 그리고 정비 노하우 등에 기초하여 이전(transfer)에 대한 메커니즘(mechanism)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품목 관할권 결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를 언급하였지만, 국내 방산업체의 활동에 핵심적인 사항은 국무부의 방위교역통제실(ODTC)에서 미국무기목록(USML)상의 방위품목과 방위용역에 대한 영구수출(permanent export)과 임시수입(temporary import) 면허를 심사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무기 목록(U. S. Munitions List)**

ITAR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는 품목들은 미국 무기 목록(USML)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며(22 CFR 121.1), 무기 목록상의 품목은 대체로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키는데, ① 특별히 군사용으로 설계, 개발, 규격화, 채택 또는 개량되었고 ② 그 품목들이 지배적으로 상용이 아니며, ③ 상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나 용역과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④ 중요한 군사적 또는 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또한 무기 목록의 핵심적인 요소인 미사일 기술통제제도(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적용되는 품목들에 대한 설명도

미국 무기 목록(USML) 범주별 내용

- Category I : Firearm
- Category II : Artillery Projectors
- Category III : Ammunition
- Category IV : Launch Vehicles, Guided Missiles, Ballistic Missiles, Rockets, Torpedoes, Bombs and Mines
- Category V : Explosives, Propellants, Incendiary Agents, and Their Constituents
- Category VI : Vessels of War and Special Naval Equipment
- Category VII : Tanks and Military Vehicles
- Category VIII : Aircraft and Associated Equipment
- Category IX : Military Training Equipment
- Category X : Protective Personnel Equipment
- Category XI : Military Electronics
- Category XII : Fire Control, Range Finder, Optical and Guidance and Control Equipment
- Category XIII : Auxiliary Military Equipment
- Category XIV : Toxicological Agents and Equipment and Radiological Equipment
- Category XV : Spacecraft Systems and Associated Equipment
- Category XVI : Nuclear Weapons Design and Test Equipment
- Category XVII : Classified Articles, Technical Data and Defense Services Not Otherwise Enumerated
- Category XVIII : 예비 (Reserved)
- Category XIX : 예비 (Reserved)
- Category XX : Submersible Vessels, Oceanographic and Associated Equipment
- Category XXI : Miscellaneous Articles

상세히 담고 있다. (22 CFR 121.16)

미국 무기 목록(USML)은 범주 1(Category I)에서부터 범주 21(Category XXI)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각 범주에는 더 세부적인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품목과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22 CFR 121.1)

또한 미국무기목록(USML)에는 2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 첫번째는 주요군사장비(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인데, 주요군사장비(SME) 목록은 미국무기목록(USML)의 각 범주별로 상세한 품목이 열거되어 있는 중에서 별표시(*)로 되어 있는 품목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유용성이나 능력으로 인하여 특별히 수출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말한다. (22 CFR 120.7)

두번째는 주요방위장비(Major Defense Equipment)인데, 주요방위장비(MDE)는 무기수출 통제법(22 U.S.C 2794(6) note)에 근거하고 있는데, 미국무기목록(USML)의 주요군사장비(SME) 중에서 비 순환 연구개발비용(nonrecurring R&D cost)이 5천만달러 이상 또는 전체 생산비가 2억달러 이상인 품목을 말한다. (22 CFR 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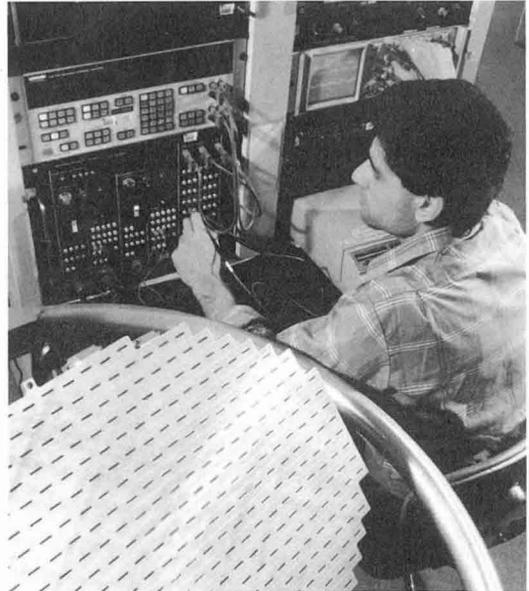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국무부에서 면허를 발급하기 30일 전에 사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400만달러 이상의 주요방위장비(MDE)
- 5천만달러 이상의 방위품목 및 방위용역
- 비 나토국가에서의 주요군사장비(SME) 생산을 위한 제조 및 기술지원 협정 체결
- 1.400만달러 상당의 주요방위장비(MDE)의 제3국으로의 이전

만약에 의회에 통보된 후 30일(나토국가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2 CFR 123.15)

*제3국 이전(Transfer)의 승인

ITAR에 따르면, 재수출(re-export) 또는 재전환



ESG 레이더의 성능 테스트 모습

(retransfer)이란, 방위품목이나 방위용역을 최종 사용, 최종사용자 변경 또는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목적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수출면허나 수출신고서(SED)에 최종 목적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반드시 최종적인 사용 국가가 되어야 하며, 방위품목이 최종사용이나 최종사용자가 변경이 되어 재판매(reselling), 이전(transferring), 또는 폐기(disposing) 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방위교역통제실(ODT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CFR 123.9)

또한 주요군사장비(SME) 및 비밀 기술체원을 포함한 비밀품목을 수출시에는 비전환 및 사용 증명(Non-transfer and use assurances)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신청서류는 DSP-83 양식이다.

이 증명서 내용에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방위교역 통제실(ODTC)의 서면 승인에 의해서 특별히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수령자와 외국의 최종사용자가 외국의 최종사용지로 명시된 국가 이외로 신청서에 열거되어 있는 주요군사장비(SME)를 재수출, 재판매,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22 CFR 123.10) (다음호에 계속)